

의안 번호	2493	【울산광역시 중구 노인의 성인지 감수성 향상 지원 조례안】 <b>심사보고서</b>
----------	------	--

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5. 11. 7.(금), 홍영진 의원 외 9명
- 나. 위원회 회부일자 : 2025. 11. 7.(금)
- 다. 위원회 심사일자 : 2025. 12. 3.(수)

## 2. 제안설명 요지

### 가. 제안이유

- 노인의 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위하여 체계적인 성인지교육 및 성교육을 지원하고, 노인 대상 성 관련 사회문제를 예방함으로써 건강한 노년의 삶과 사회통합에 기여하고자 함

### 나. 주요내용

- 구청장 등의 책무(안 제4조)
- 성인지교육 및 성교육의 실시(안 제5조)
- 전문기관과의 협력(안 제6조)
- 예산지원(안 제7조)
- 실태조사 및 평가(안 제8조)
- 시행규칙(안 제9조)

### 다. 근거법규

- 「노인복지법」 제4조

### 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김순정)

- 노인의 성인지교육 및 성교육이 과거에는 금기시되거나 제한적으로 이루어졌으나 사회의 변화에 따라 노년기의 건강한 성인식과 평등한 의사소통, 성희롱 예방 등 성평등한 가치관 확립을 위해 필요하게 됨
-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해 노인의 성인지교육 및 성교육의 대상, 내용, 방법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일회성이 아닌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육 운영이 가능하도록 기반을 마련함
- 상위법인 「노인복지법」 제4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에 대한 책임과 이를 위한 시책개발 및 추진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
- 제반 규정을 검토한바,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 됨.

### 4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# 근 거 법 규

## 「노인복지법」

- 제4조(보건복지증진의 책임)**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,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.
-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제2조에 규정된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- ③ 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그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노인의 보건복지가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